

## 5.1.13 취·창업지원센터운영규정

제정	2013. 11. 29.
전부개정	2017. 09. 14.
개정	2018. 03. 14.
개정	2019. 10. 14.
개정	2020. 02. 28.
개정	2021. 02. 16.
개정	2021. 02. 25.
개정	2023. 03.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03.14.>

1. 취·창업지원센터 사업 운영계획 수립 <개정 2020.02.28.>
2. 교육부 취업통계조사 <개정 2020.02.28.>
3. 취·창업지원센터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3.14., 2020.02.28.>
4. 학생 취·창업정보 계획 수립 <개정 2020.02.28.>
5. 취·창업 로드맵 컨설팅
6.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시행
7. 취·창업정보 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배부
8. 취업추천 업무 지원
9. 취업률 통계조사 및 분석
10. 학생 직무역량 개발 및 지원
11. 창업아이디어 발굴
12. 취·창업 관련 위원회 운영
13. 학생특성 맞춤형에 따른 취업전략캠프 및 캣취업공동체 지원
14. 학생 취업 및 기업연수 시행
15. 창업사업모델 개발
16. 창업전략 캠프운영 및 창업전략 공동체 운영
17. 대학 내 관계 부서와의 협력·연계에 관한 사항
18. 취업 및 창업 사관학교 운영 및 지원
19. 진로탐색 및 진로취업상담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1.02.16.>
20. 프로그램 운영 성과평가 및 환류 <신설 2021.02.16.>
21. 취·창업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 및 각종 조사연구 등 수행 <신설 2021.02.25.>
22.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호변경 2021.02.25.>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02.28.>

② 삭제 <2020.02.28.>

③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8.03.14.>

제4조(취·창업운영위원회) ① 센터에 취·창업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8.03.14.>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03.14.>

③ 운영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03.14.>

제5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03.14., 개정 2021.02.16.>

1. 센터 사업 운영계획 및 정책의 수립 <개정 2018.03.14., 개정 2021.02.16.>

2. 규정의 개정과 폐지 <개정 2018.03.14.>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8.03.14.>

4. 삭제 <2018.03.14.>

제6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03.14.>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03.14., 개정 2021.02.16.>

③ 삭제 <2018.03.14.>

제7조(취·창업지도위원회) ① 센터에 취업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8.03.14.>

② 지도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학과(부)에서 1~2명을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03.14.>

③ 지도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지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18.03.14.>

제8조(지도위원회 기능) 지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03.14.>

1. 진로 및 취·창업지원 사업의 추진 <신설 2018.03.14.>

2. 진로 및 취·창업지원 정책의 논의 <신설 2018.03.14.>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8.03.14.>

제9조(연구위원)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을 위하여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8.03.14.><개정 2019.10.14.>

제9조의2(취·창업지원센터 자체평가위원회) ① 취·창업지원센터의 사업운영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취·창업자체평가위원회(이하“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전임교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6인 이내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개정 2023.03.31.>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제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02.16.>

1.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과평가 및 개선·환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2.16.>

2. 삭제 <2021.02.16.>

3.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센터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03.14.>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